

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녹색 헌법을 제안합니다

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녹색 헌법을 제안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개헌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 점도 동감합니다. 우리는 꽤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생각합니다. 개헌은 녹색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누군지에 따라 이렇게 나라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또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헌법이, 그것도 녹색 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몇몇 녹색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개헌안이 있습니다. 이 안이 당신의 마음에도 들기를 바랍니다. 지난여름, 녹색전

환경연구소는 녹색 헌법을 주제로 세 차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녹색 헌법은 우리들의 헌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시간표는 우리 생각보다 빠릅니다. 내년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은, 그리고 녹색시민들은 그렇게 빨리 될까 싶습니다.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중요한 일을 그르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라는 녹색 세상을 위한 녹색 헌법을 상상해봅시다.

첫째, 생명중심주의

생명을 가꾸는 많은 사람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명중심주의가 헌법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에 백번 동감합니다.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 등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지구 스스로 생태계를 복원하는 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순환과 재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삶과 사회의 전환을 추진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직 적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문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우리가 헌법이 바뀐다고 바뀔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개헌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봅시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지키자는 녹색 헌법을 제안해봅시다. 그런 뜻을 담은 조문을 마련합시다.

녹색헌법(안) 제1조

모든 생명은 존엄한 가치가 있다.

녹색헌법(안) 제5조

- ① 모든 사람에게 산, 들, 강, 바다를 포함한 자연과 식물, 동물을 포함한 생물 그리고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할 의무가 있다.

【참고】 한국 녹색당 강령, 지속가능성 중에서

우리 사회는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끝없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방사능 오염과 같은 거대한 환경 위기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앞으로 태어날 지구의 아이들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생명중심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나요? 아니라면 말씀해 주세요. 더 나은 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을 할 든든한 국가 기구도 마련해봅시다. 사실, 기구나 제도를 만드는 일은 녹색시민이 보기에 최선은 아닙니다. 허울뿐인 명분, 보여주기식 행정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는 뒷짐 지고 있을 테니, 녹색시민들, 너희가 잘 해봐라’라는 식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시키는 방식도 문제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행정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는 뜻으로 생태환경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아래 조문이 바로 그런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녹색헌법(안) 제133조

기후변화, 생물의 멸종, 자연자원 고갈, 방사능 오염과 같은 생태환경 위기를 방지하여 지구의 순환과 재생을 보전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은 물론 자연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적 불이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생태환경위원회를 둔다.

당신은 우리가 쉽게 사 먹는 생수병을 보며 걱정합니다. 물은 소중한

자원인데 몇몇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쉽게 써버려도 되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유한하며 낭비할 수 없습니다. 물만이 아니라 땅, 불(화석연료), 공기와 같은 자연은 공동자원임을 확실히 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가 남용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평등하게 쓰게 합시다. 물론 모두가 다 마구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니 누구도 남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녹색헌법(안) 제8조

자연은 공동자원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가 남용하지 못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러면 어떨까요. 인간의 말을 못 하는 생명들의 권리를 인간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대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 그때 소송인 중 하나인 도롱뇽은 소송 수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당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관들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니 법을 개정합시다.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에 다른 생명의 권리를 인간이 대변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면 하위법들도 바뀝니다.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니다. 관청의 행정도 달라집니다. 차차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간복지라는 미명으로 온갖 생명을 마구 죽이면 결국 인간들도 죽게 된다는 단순한 깨달음을 헌법에 반영합시다.

녹색헌법(안) 제5조

- ② 모든 사람과 법인은 생태가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자연의 생명권을 대변할 수 있다.

【참고】에콰도르 헌법 TITLEII 권리, 제7장 자연의 권리, 제7조
(전략) 모든 사람, 공동체, 민족들과 국가들은 공공기관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략) 정부는 자연인과 법인체 그리고 공동체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더욱 존중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오랫동안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했습니다. 누구도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정말로 전쟁만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서로를 죽음에 이르게 할지 모릅니다. 한반도 평화는 평화로운 수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장 군대를 없애자는 말이 아

닙니다.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이루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헌법에도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평화가 곧 생명입니다.

녹색헌법(안) 제7조

- ① 대한민국은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다.

둘째, 자치와 분권

녹색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을 중시합니다. 오히려 과정에서 녹색가치가 발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권력이 강할수록 과정을 무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 헌법의 두 번째 특징은 자치와 분권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스스로 가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또 빠듯하게 살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들은 세상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참여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무관심 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하는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대의나 명분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더 작게 나누자고, 더 작은 노력을 모아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우리 의견이 더 잘 반영되게 하자고, 선거연령도 낮춰서 청소년의 의견도 반영하자고, 국가기관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을 함부로 억압하지 못하게 하자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뜻을 어떻게 헌법에 반영할지 말씀드립니다. 현행 헌법에는 자치권에 관한 분명한 표현이 없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순한 두 개 조항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규정한 원칙 조항이 필요하고, 이 자치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을 언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주민투표권, 주민발안권, 주민소환권, 주민소송권입니다.

녹색헌법(안) 제34조

- ① 모든 주민에게 자치권이 있다.
- ② 모든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주민발안권, 주민소환권, 주민소송권이 있다.

또한, 현재는 헌법개정 제안을 대통령이나 국회만 할 수 있고, 법률도 국회만 제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를 임기도중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녹색 가치가 실현된 사회라면 국민 일정수가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고, 법률안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이 되고, 법률이 좀 더 우리의 뜻을 반영하게 되며,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녹색헌법(안) 제142조

- ① 헌법개정 제안은 직전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거나 민의원이나 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녹색헌법(안) 제37조

- ① 모든 국민에게 법률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다만, 직전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녹색헌법(안) 제38조

- ① 모든 국민에게 소환권이 있다. 직전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이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소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녹색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다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 가지 제도로 전국을 통일하기보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정치제도를 고안하자는 제안이 타당합니다. 물론 전국이 통일해서 지켜야 할 원칙도 있지요. 자율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자치와 분권이라는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은 내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정부의 행정 규모는 지금보다 작고 유연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치 중앙정부를 그대로 축소한 것 같은 형태로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이러한 규모에 맞춰져야 합니다. 시·군·구의회만 해도 우리 일상과 거리가 멉니다. 더 작은 행정 단위에서 생활인의 감각으로 동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인구수를 기준으로, 몇 만 명보다 작은 단위로 의회를 구성하라고 헌법에 규정할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헌법에 모든 사안을 세밀하게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밀할수록 또 다른 규제가 되고 다양성도 실현되지 않으니

까요. 따라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전제를 달고 자치의회 의 임기나 선출방식, 조직의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해당 광역자치의회가 법률로 정합니다. 이를테면 충청북도 의회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물론 충북 안의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 관하여 여러 사안을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 정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대통령을 뽑듯이 도지사나 시장을 뽑고 그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식으로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렇게 정부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어떨까요? 더 녹색가치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헌법은 광역자치의회가 광역자치정부의 형태를 법률로 제정하고 그 운영방식도 자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정치제도가 공존하다 보면 그 지역의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찾을 수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한국에 제일 잘 맞는 제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치의회와 자치정부가 국회나 중앙정부에 비해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작은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세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 등 다각도의 변화를 녹색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광역자치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이미 위에서 광역자치의회가 이런저런 사

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은 국회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자치의회는 조례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헌법에서는 광역자치의회에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에 직결되는 사안을 정하여 그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률보다 광역자치의회의 법률을 우선 적용하게 했습니다.

녹색헌법(안) 제50조

- ① 입법권은 자치의회와 국회가 행한다.
- ② 자치의회는 기초자치의회와 광역자치의회로 구성하며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과 조례를 입법한다.
- ③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의 법률을 입법한다.
- ④ 국가의 법률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 있다. 다만, 헌법에 광역자치의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녹색헌법(안) 제52조

- ③ 광역자치의회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 의원의 선출방식과 임기, 자치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녹색헌법(안) 제84조

- ① 행정권은 자치정부와 정부가 행한다.
- ② 자치정부는 기초자치정부와 광역자치정부로 구성하며 자치정부의 조직과 운영, 자치정부의 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등은 광역자치의회가 법률로 정한다.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을 추구하더라도 전국이 통일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치의회와 국회의 의원을 선출할 때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안에서도 비례성을 얼마나 철저히 따르느냐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세부 결정은 각 자치의회가 하겠지만 적어도 비례대표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아예 전국을 한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제라고 헌법에 명시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가장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보통의 유권자는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제에 익숙합니다. 누가 1등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가 비율대로 반영됩니다. 여러 정당이 각자 자기 지지율대로 의석을 차지합니다. 이 원리가 녹색에 부합합니다. 인구 규모로 보면 작지만, 가치로 보면 모두가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여 의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왜곡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좋은 점은 합의제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국회나 자치의회는 마치 대결의 장인 듯합니다. 여당과 야당으로 갈리어 누가 이기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장애인,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소수정당이 나오고 다양한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도 원내에 진입하면, 표가 분산됩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제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토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녹색헌법(안) 제52조

② 자치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녹색헌법(안) 제56조

③ 민의원 의원은 전국을 한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하락)

녹색시민들은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실을 비판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필리핀, 터키 등)를 보아도 18세 이상으로 정한 나라가 많고, 16세로까지 낮춘 나라도 있기 때문이죠.

녹색시민들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18세의 청소년들, 즉 고등학생 중 일부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결정하고 선거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대거 유권자로 편입되면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 세대 간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선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만 25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살 대학생이 국회의원이 되어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40세가 넘어야 합니다. 의원내각제를 취하면서 30대의 지도자를 총리로 선출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40세는 넘어야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체 어떤 근거인가요?

나이 제한을 낮춘다고 해서 어린 후보들이 대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수라도 정치인으로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젊은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을 미리 차단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녹색헌법(안) 제35조

- ② 16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자치와 분권에 관하여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법원에 배심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안입니다.

재판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권한은 판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심도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도 있습니다. 배심제도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신뢰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을 우리의 지성에 맡기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중한 죄를 다루는 형사사건, 즉 합의부 형사사건에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더구나 배심원들의 평결을 재판부가 따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유독 사법 권력은 판사에게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그 뜻에 따라 녹색 헌법은 모든 사건을 배심제로 판결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녹색헌법(안) 제123조

- ④ 법원은 배심제로 판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헌법이 너무 어렵다는,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아니라는 푸념이 들립니다. 헌법의 머리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前文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많은 말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데다 한자어투성이라서 도무지 우리말 같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조문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약속을 적으면 어떻게 지키나요?

녹색헌법은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써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

자어를 무조건 빼거나 생소한 순우리말 표현만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게 쓰자는 원칙을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한자표기가 줄어들고 쉽고도 아름다운 우리말이 늘어납니다.

녹색헌법(안) 머리말

대한국민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 깃든 모든 생명을 가꿉니다. 서로 돕고 살리는 세상을 되찾기 위하여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으며 생명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를 이뤄 왔습니다. 헌법은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새롭게 하기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0000년 00월 00일 헌법을 개정합니다.

【참고】 한국 녹색당 강령, 머리말 중에서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모든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드는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명의 고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락)

녹색헌법(안) 제46조

⑥ 피고인의 자백이 오랫동안 부당한 구속과 협박·폭행·고문을 못 견디거나 조사자에게 속아서 한 진술일 때, 또 그것이 정식 재판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하나뿐인 증거일 때에는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고】 현행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제 당신께 묻습니다.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개헌은 안 하니만 못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내년에 개헌투표를 추진하면 우리 녹색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녹색 시민들의 뜻을 모아 녹색 헌법을 제안합니다.
개헌을 계기로 녹색 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저도 동참입니다.

녹색 헌법(안)

이 헌법은 녹색전환연구소가 녹색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몇 차례 토론을 거쳐 만든 개정안의 전문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녹색헌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녹색헌법(안)’은 완결된 조문이라기보다는 헌법에 녹색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시입니다. 누구라도 녹색가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10차 개정헌법 머리말

대한국민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 깃든 모든 생명을 가꿉니다. 서로 돕고 살리는 세상을 되찾기 위하여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으며 생명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회를 이뤄 왔습니다. 헌법은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새롭게 하려고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0000년 00월 00일 헌법을 개정합니다.

제1장 기본가치

제1조

모든 생명은 존엄한 가치가 있다.

제2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제1절 생명

제3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와 다른 생명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제4조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제5조

- ① 모든 사람에게 산, 들, 강, 바다를 포함한 자연과 식물, 동물을 포함한 생물 그리고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할 의무가 있다.
- ② 모든 사람과 법인은 생태가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거나 그렇게 될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자연의 생명권을 대변할 수 있다.

제6조

- ① 모든 사람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보전하며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키며 죽을 권리가 있다.
- ③ 사형,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 ④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한다.

제7조

- ① 대한민국은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다.
- ② 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징총 병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대체 복무를 한다.

제2절 평등

제8조

자연은 공동자원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 공공단체가 남용하지 못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기 위해 누구나 쓸 수 있다.

제9조

누구나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조건 없이 받으며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공평하게 얻는다.

제10조

-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 ② 모든 사람은 성, 종교, 사상, 지역, 출신, 종족, 언어, 연령, 신체 조건, 정신 장애, 성적 지향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 ① 국가는 고용,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성 평등을 보장한다.
- ②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
- ③ 국가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한다.

제12조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관한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다.

제13조

노인에게 존엄하게 살 권리와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4조

장애인에게 자립하여 존엄하게 살 권리와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절 자유

제15조

모든 사람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다.

제16조

모든 사람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

제17조

- ①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어디나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 ②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도 추방당하지 않는다.
- ③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망명권을 보장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제19조

- ① 모든 사람에게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
- ②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제20조

모든 사람에게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 ① 모든 사람에게 알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사람에게 자기 정보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22조

- 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허거나 검열은 금지된다.
- ② 모든 사람에게 언론과 출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허거나 검열은 금지된다.
- ③ 모든 사람에게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4절 사람답게 살 권리

제23조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지식과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다.

제26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제27조

- ①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한다.
- ② 국가는 장애·질병·노령이나 그 밖의 이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

제28조

- ① 모든 사람에게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초등교육을 포함한 법률로 정한 기본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국가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한다.
- ④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과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9조

국가는 생명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제30조

- ① 국가는 최저임금을 포함하여 존엄한 인간 가치를 보장하는 노동기준을 법률로 정한다.
- 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법률에 따라 일할 기회를 남보다 앞서 준다.

제31조

- ①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 ② 국가는 법률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외국인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33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과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5절 정치참여

제34조

- ① 모든 주민에게 자치권이 있다.
- ② 모든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주민발안권, 주민소환권, 주민소송권이 있다.

제35조

- ① 모든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이 있다.
- ② 16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 ③ 투표와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는 법률에 따라 투표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

제36조

모든 국민에게 헌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헌법개정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 ① 모든 국민에게 법률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다만, 직전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국가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가 제안한 법률에 대해 제안한 날로부터 90일 이후 12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며,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한다. 이 법률은 확정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38조

- ① 모든 국민에게 소환권이 있다. 직전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이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소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가 소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90일 이후 12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며,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소환을 확정한다.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 ② 정당은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 ③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정당을 보호한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할 때에는 총리가 내각의 의결을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한다.

제40조

- ① 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공무를 맡을 권리가 있다.
-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봉사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살 의무가 있다.
- ③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따라 보장한다.

제6절 권리청구

제41조

- 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42조

- ① 모든 사람에게 헌법과 법률대로 하는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군인도 군무원도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군사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 ③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형사피고인을 곧바로 공개 재판해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 법원에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3조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무죄로 판결하면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44조

공무원이 근무 중에 법을 어겨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한다. 이 경우에 공무원 자신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45조

남의 범죄행위 때문에 생명, 신체, 정신, 재산 등에 피해를 당하면 국가는 진실을 규명하고 법률에 따라 구조한다.

제7절 사법절차

제46조

- ① 국가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하지 못하며 보안 처분을 하거나 노역을 강요하지 못한다.
- ②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진술을 강요하지 못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내보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사람을 처리할 때는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모든 사람에게 사법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⑤ 국가는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국가는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법률에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곧바로 알려야 한다.
- ⑥ 피고인의 자백이 오랫동안 부당한 구속과 협박·폭행·고문을 못 견디거나 조사자에게 속아서 한 진술일 때, 또 그것이 정식 재판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하나뿐인 증거일 때에는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제47조

- ① 국가는 행위 시의 법률에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사람을 소추하거나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지 못한다.
- ② 국가는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거두지 못한다.
- ③ 모든 사람은 그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④ 특정 집단의 전부나 일부를 말살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살해와 공권력으로 행한 반인륜적 범죄는 법률에 따라 공소 시효를 배제한다.

제48조

- ①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와 재판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은 금지된다.
- ② 경찰과 자치경찰에게 수사할 권한이 있다.
- ③ 검찰과 자치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
- ④ 국가는 형사피고인을 유죄로 확정판결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8절 권리 존중과 그 제한

제49조

- ① 국가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존중한다.
- ② 모든 사람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③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되는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3장 자치의회와 국회

제1절 총칙

제50조

- ① 입법권은 자치의회와 국회가 행한다.
- ② 자치의회는 기초자치의회와 광역자치의회로 구성하며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법률과 조례를 입법한다.
- ③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의 법률을 입법한다.
- ④ 국가의 법률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이 있다. 다만, 헌법에 광역자치의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제51조

- ① 국세의 종목, 세율, 징수방법 등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 ② 자치세의 종목, 세율, 징수방법 등은 광역자치의회가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의 종목, 세율, 징수방법, 배분방식 등은 참의원이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자치의회

제52조

- ① 자치의회는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치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 ③ 광역자치의회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 의원의 선출방식과 임기, 자치의회 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제53조

광역자치의회는 헌법에 정한 다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안전
2. 자치경찰과 자치검찰의 조직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
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5.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처리해야 할 환경, 에너지, 보건, 복지, 노동, 실업대책, 자원관리, 식품안전, 주택공급
6.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처리해야 할 산업정책, 지역경제,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공간계획,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7.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사이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사이나 기초자치의회와 기초자치정부 사이의 갈등조정·사무배분·관할구역조정·재정조정지원협력
8. 헌법이나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따라 입법권이 위임된 사무

제54조

자치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직무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의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55조

- ① 자치의회 의원에게 청렴의 의무가 있다.
- ② 자치의회 의원은 공익을 앞세워 양심에 따라 일한다.
- ③ 자치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남이 이익을 얻도록 도와줄 수 없다.

제3절 국회

제56조

- ① 민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민의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60명 이상으로 한다.
- ③ 민의원 의원은 전국을 한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민의원 의원선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 ① 참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참의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120명 이상으로 한다.
- ③ 참의원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한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참의원 의원 선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8조

- ①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다만, 민의원이 해산하면 해산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한다.
- ②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다.
- ③ 민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은 각각 12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제59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0조

- ① 민의원은 의장 한 사람과 부의장 두 사람을 뽑는다.
- ② 참의원은 의장 한 사람과 부의장 한 사람을 뽑는다.
- ③ 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61조

민의원과 참의원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회의 사항과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62조

- ① 민의원과 참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민의원과 참의원에서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각 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3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로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64조

- ①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가 있다.
- ② 국회의원은 공익을 앞세워 양심에 따라 일한다.
-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남이 이익을 얻도록 도와줄 수 없다.

제65조

- ① 국회는 개회와 폐회를 의결하며 폐회와 휴회 기간을 합하여 연간 60일을 넘길 수 없다.
- ② 각 원은 폐회나 휴회 중이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나 대통령, 총리가 요구하면 회의를 연다.

제66조

- ① 민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독립하여 회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원합동회의를 연다.

- ② 민의원과 참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의장이 국가안정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7조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한다.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한다.

제68조

- ① 양원의 의결이 필요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이 같지 않을 때는 양원협의회에서 단일안을 작성·발의하여 각 원에서 다시 의결한다. 양원협의회는 구성원의 3분의 2를 민의원 의원으로, 3분의 1을 참의원 의원으로 한다.
- ② 예산법률안은 민의원 가결안이 참의원에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참의원이 이를 의결하지 않거나 각 원이 양원협의회 의 단일안을 가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의 민의원 가결안을 양원이 가결한 것으로 여긴다.

제69조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해도 폐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폐기한다.

제70조

민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은 소속된 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총리는 내각의 의결을 거쳐 양원 중 하나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예산에 관한 법률안은 민의원에 먼저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은 참의원에 먼저 제출한다.

제71조

- ① 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두어야 한다.
- ② 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설립과 변경,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을 포함한 그 밖의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제72조

- ① 국회가 법률안을 가결한 다음 15일 이후 20일 이내에 참의원 의장이 이를 법률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 ②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한 법률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확정·공고 전에 이 안을 다시 논의하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총리가 내각의 의결을 거쳐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법률안 일부에 대하여 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이를 처음 가결

한 원에서부터 다시 심의하며, 각 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한다. 가결일 이후 5일 이내에 참의원 의장이 이를 법률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한 법률안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확정·공고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은 법률안은 결정선고일 이후 5일 이내에 참의원 의장이 이를 법률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 ④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뒤에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73조

- ① 행정부는 예산법률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법률로 제정한다.
- ② 국회가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면, 제정할 때까지 행정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과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한 지출의무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74조

-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에 관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예비비에 관한 예산법률안은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행정부는 예비비 지출 내용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

행정부가 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법률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6조

국회는 행정부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다.

제77조

- ① 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밖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국가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채무부담의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 ①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②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보내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역 안에 머무르게 하는 일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79조

- ① 민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각에 대한 연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총리가 요구한 내각 신임 동의안에 대해서도 민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각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내각 불신임 의결은 후임 총리를 선출하고 재직 중인 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대통령은 민의원이 선출한 후임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결은 불신임발의안이나 신임동의안이 민의원에 제출된 후 48시간이 지난 이후에만 표결할 수 있으며,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총선거를 통하여 내각이 구성된 후 1년 안에는 내각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 민의원은 내각 불신임 의결 이후 1년 안에는 내각 불신임을 다시 의결할 수 없다.
- ④ 민의원은 내각의 개별 장관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총리에 대한 불신임은 내각에 대한 연대 불신임으로 여긴다.

제80조

민의원은 법률로 정한 공무원의 임명을 인준한다.

제81조

- ① 대통령·총리·장관·헌법재판소 재판관·최고법원 판사·사법행정위원회 위원·생태환경위원회 위원·감사원 감사위원과 법률로 정한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민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탄핵 소추가 의결된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다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참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탄핵 결정은 공직을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그것으로 민사나 형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82조

- ① 민의원과 참의원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정조사 절차를 포함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 ① 총리, 장관, 행정부 위원은 민의원, 참의원이나 각 원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② 민의원, 참의원이나 각 원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총리, 장관, 행정부 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총리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관이, 장관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부 위원이 대신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4장 자치정부와 정부

제1절 총칙

제84조

- ① 행정권은 자치정부와 정부가 행한다.
- ② 자치정부는 기초자치정부와 광역자치정부로 구성하며 자치정부의 조직과 운영, 자치정부의 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등은 광역자치의회가 법률로 정한다.
- ③ 정부의 조직과 운영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제85조

- ① 자치정부와 정부는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② 자치정부와 정부는 자치정부와 정부 사이, 자치정부들 사이에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사무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참의원이 법률로 정한다.
- ③ 자치정부와 정부 사이, 자치정부들 사이에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참의원이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자치정부

제86조

- ① 기초자치정부는 해당 기초자치의회가 조례로 정한 사항을 고유사무로 집행하고, 그 밖에

광역자치의회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수임한 사무를 집행한다.

- ② 기초자치정부의 장은 법률이나 조례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수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

- ① 광역자치정부는 해당 광역자치의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고유사무로 집행하고, 그 밖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수임한 사무를 집행한다.
- ② 광역자치정부의 장은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수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3절 정부

제1관 대통령

제88조

-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 ③ 모든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차 선거 14일 이후 21일 이내에 제2차 선거를 한다. 이때 후보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중 표를 가장 많이 얻은 2명에 대해서만 제2차 투표를 한다.
- ④ 대통령 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 ⑤ 대통령 선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 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35일 또는 20일 전에 후임자를 뽑는다.
- ②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는다.

제90조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여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이뤄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1조

- ①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제92조

- 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의원 의장·민의원 의장·참의원 부의장·민의원 제1 부의장·민의원 제2부의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민의원 해산권을 갖지 못한다.
- ②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대통령은 민의원에 사퇴서를 제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제94조

- ① 대통령은 총리가 체결하고 비준한 조약을 확인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한다.
- ② 대통령은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③ 대통령은 제1항의 조약과 제2항의 국제협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④ 대사와 특사는 내각의 의결을 거쳐 총리가 요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내각의 의결을 거쳐 총리가 요청한 경우 대통령은 민의원의 동의를 받아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95조

대통령은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수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내각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다.

제96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 평화, 교육, 문화예술, 방송통신 등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리의 요청으로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1. 총리가 요구한 신임 동의안이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2. 민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의결한 경우
- ② 민의원 해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한다.
- ③ 민의원 해산으로 인한 선거를 한 후 1년 안에는 다시 민의원을 해산할 수 없다. 다만, 민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제98조

대통령은 스스로 결정한 경우나 총리가 요청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훈장과 그 밖의 영전을 준다.

제99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증거보전 등을 위한 수사는 할 수 있다.

제101조

대통령은 총리·장관·국회의원과 그 밖의 법률로 정한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관 행정부

제102조

- ① 행정부는 총리, 내각, 행정 각부로 구성된다. 총리는 행정부를 지휘한다.
- ② 내각은 의장인 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 ③ 행정 각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 ① 총리는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장관은 총리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 ③ 총리가 행정부 총사퇴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을 해임한다.

제104조

- ① 총리와 장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민의원은 15일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선출 전까지는 총리가 사전에 순위를 정하여 지명한 장관이 그 순서에 따라 총리 권한을 대행한다.

제105조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106조

- ①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지휘한다.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며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 ③ 국군의 조직,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 ① 총리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 처분에 대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명령을 내릴 것을 내각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총리는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것을 내각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곧바로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밝혀 내각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내각이 재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을 곧바로 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이 곧바로 민의원과 참의원에 보고하고 양원 합동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4항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그 명령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할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 ⑥ 대통령은 그 명령을 국회가 승인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를 곧바로 공고해야 한다.

제108조

- ① 총리는 전쟁·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병력이 필요하면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것을 내각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전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서면으로 거부사유를 밝혀 내각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내각이 재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
- ③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④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법률에 정하는 대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단체행동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곧바로 민의원과 참의원에 보고해야 한다.
- ⑥ 양원합동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를 해야 한다.

제109조

- ① 총리는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국민투표일로부터 2년 안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제110조

- ① 총리는 내각의 의결을 거쳐 국정운영정책을 세우고 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정책의 범위 안에서 장관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총리는 자신의 권한 일부를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1조

- ① 내각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 ② 다음 사항은 내각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행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
 4. 예산·결산·국유재산관리·국가가 부담할 계약과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과 명령·계엄선포와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집회 요구
 8. 영전수여
 9. 행정 각부 사이의 권한 분배
 10. 민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에 관한 사항
 11. 정당해산의 제소
 12. 행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청원
 13.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검찰총장·경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와 그 밖의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4. 그 밖에 총리나 장관이 제출한 사항
- ③ 내각은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의결할 때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총리가 결정한다.

제112조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각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3조

- ① 대북정책·군사정책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 정책을 내각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총리의 자문에 응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총리가 주재한다.
- ③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 ① 총리는 법률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수입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리령을 정할 수 있다.
- ② 장관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수입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령을 정할 수 있다.

제115조

총리는 문서로 권한을 행사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장관이 함께 서명한다.

제116조

총리와 장관은 법률로 정한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장 헌법재판소와 법원

제1절 총칙

제117조

- ① 사법권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행한다.
- ②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2절 사법행정위원회

제118조

- ①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맡는다.
- ② 사법행정위원회는 민의원이 선출하는 3명, 참의원이 선출하는 3명, 총리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 ③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 ④ 사법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⑤ 사법행정위원회는 어떠한 형태로도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
- ⑥ 사법행정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절 헌법재판소

제119조

-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재판관과 3명의 예비재판관을 둔다.
- ②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예비헌법재판관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의원에서 선출한다.
- ③ 12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은 9명 이하로 한다.

제120조

- 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 예비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한다.

제121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맡는다.

1.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
2. 헌법으로 정한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위헌여부 심판
3. 법원이 요청한 법률·명령·규칙·조약·조례의 위헌여부 심판
4. 탄핵 심판. 다만, 헌법재판관의 탄핵 심판은 제외한다.
5. 정당 해산 심판
6. 국가기관들 사이·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권한 다툼에 관한 심판
7. 법률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8.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심판
9. 법률로 정한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심판
10. 대통령과 총리의 직무수행 불능 여부에 관한 결정

제122조

- 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절 법원

제123조

- ① 법원은 일반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노동법원, 특허법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일반법원은 일반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재판권, 가정법원은 가사재판권, 노동법원은 노동재판권, 특허법원은 특허재판권을 각각 행사한다. 다만, 담당 소재가 명백하지 않은 사건은 일반법원의 담당으로 한다.
- ③ 각 법원은 최고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조직한다.
- ④ 법원은 배심제로 판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법원의 조직,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4조

- ① 각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최고법원 판사를 둔다.
- ②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판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원에서 선출한다.
- ③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최고법원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최고법원장이 임명한다.
- ④ 각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25조

- ① 최고법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② 최고법관 판사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 ③ 최고법원장과 최고법원 판사가 아닌 법관의 임기는 법률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26조

- ① 최고법원 판사회의는 해당 법원의 법관이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하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정직·감봉·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 ② 최고법원 판사회의는 해당 법원의 법관이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에 따라 해임한다.

제127조

각 최고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각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법원 사이의 업무협력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제128조

- 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각 고등법원과 각 지방법원을 설치한다.
- ②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전국 단위로 통일된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재판에 적용한다.

제129조

법률·명령·규칙·조약·조례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제130조

- ① 행정재판에 앞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
- ② 특허재판에 앞서 특허심판을 할 수 있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를 준용한다.

제131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2조

- ① 군사재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에서 담당한다.
- ③ 군사법원의 조직, 운영, 재판관의 자격과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생태환경위원회와 감사원

제1절 생태환경위원회

제133조

기후변화, 생물의 멸종, 자연자원 고갈, 방사능 오염과 같은 생태환경 위기를 방지하여 지구의 순환과 재생을 보전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물론 자연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적 불이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생태환경위원회를 둔다.

제134조

- ① 생태환경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민원에서 선출하는 3인과 참의원에서 선출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한다.
- ⑤ 생태환경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감사원

제135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와 법률로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제136조

-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의원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 ④ 감사위원은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하지 못한다.
- ⑤ 감사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추천절차를 포함한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⑥ 감사원의 조직과 운영,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의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37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회계검사의 결과를 국회, 대통령, 총리에게 제출한다.

제7장 경제

제138조

- ① 국가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 ② 국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 ③ 국가는 소득을 적정하게 분배하고 경제를 민주화하며, 경제 주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139조

-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거두거나 사용하거나 그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
- ③ 모든 사람은 재산권을 생태계를 과도하게 파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할 의무가 있다.

제140조

국가는 농업을 중시하고, 농지는 농민이 갖게 하며 식량을 자급하는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제141조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가방위나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고는, 사기업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없다.

제8장 헌법개정

제142조

- ① 헌법개정 제안은 직전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거나 민의원이나 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국민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60일 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한다.

제143조

- ① 국민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발의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 24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민의원이나 참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12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하여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이 제1항과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한다. 국민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대안을 제안한 경우, 두 안은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 두 안이 모두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찬성률이 높은 안으로 확정한다.
- ④ 대통령은 제3항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개정안을 곧바로 공고해야 한다.

펴낸 날 | 2017년 10월 31일
디자인·편집 |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한송)
펴낸 곳 | 사)녹색전환연구소
연락처 | 070-4820-4900
홈페이지 | igt.or.kr
대표메일 | mail2igt@daum.net

※ 이 책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